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 신설 〉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8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27인
2. 제 안 일 : 2024. 12. 11.
3. 회 부 일 : 2024.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개정안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2(회계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 ①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보좌관·선임비서관 및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기간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부터 회계책임자가 해임되거나 제44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등을 선임권자에게 인계한 때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대통령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 등(이하 “선임권자”라고 함)은 공직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¹⁾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년 1회에서 2회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²⁾

1)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자
2. 후원회의 대표자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
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 ①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에 의하고, 당해 시·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목에 의한다.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런데, 회계책임자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회계담당자는 대부분 각 의원실의 보좌진이 담당하여 무보수로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현행법에 회계책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계 담당 업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선임권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되,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회계책임자의 직무전념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모금할 수 있는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로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나. 연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는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만, 선거일이 12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가목에 의한다.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정당의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이 경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경선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40일)까지.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한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정당한 보수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의 보좌관·선임비서관 및 비서관이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그 외의 사람이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경우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정당한 보수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국회의원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이 회계책임자를 겸한 때에는 실비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의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3)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